

1. 개정이유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안 [별표2], [별표5], [별표6]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삭제	
-------	--

별표 2 제4호에 나목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모터 달린 보드	○ 종류
--------------	------

별표 5 제2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6에 나목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모터 달린 보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별표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구분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으로 한정한다)	-	
	2) 롤러스케이트	○ 치수 ○ 용도 ○ 재질 ○ 모양	
	3) 바퀴 달린 운동화	○ 종류	
	4) 모터 달린 보드	○ 종류	
	5) 창문 블라인드	-	
	6) 쌍꺼풀용 테이프	-	
	7) 속눈썹 열 성형기	-	
	8) 가(假)속눈썹(인조속눈썹)	○ 종류 ○ 재료 ○ 색상	
	9) 쇼핑카트	○ 종류 ○ 모양 ○ 용량	
	10) 휴대용 사다리	가) 제1부 주택용 사다리	○ 종류 ○ 재질 ○ 길이
		나) 제2부 도배용 사다리	○ 종류 ○ 재질 ○ 길이
		다) 제3부 원예용 사다리	○ 종류 ○ 재질 ○ 길이
1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치수 ○ 용도 ○ 재질 ○ 모양	

현행			개정안		
분류		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12) 키보드	○ 바퀴 수 ○ 구동방식 ○ 재료 ○ 규격 ○ 모양		12) 키보드	○ 바퀴 수 ○ 구동방식 ○ 재료 ○ 규격 ○ 모양

[별표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구분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
	2) 간이빨래걸이	-
	3) 선글라스	-
	4) 안경테	-
	5) 텐트	○ 종류
	6) 고령자용 신발	-
	7) 고령자용 지팡이	○ 종류 ○ 재료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9) 고령자용 목욕의자	-
	10) 고령자 위치추적기	-
	11) 물안경	○ 종류
	12) 반사안전조끼	○ 종류
	13) 스테인리스 수세미	○ 종류
	14)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15) 침대 매트리스	○ 재질
	16) 우산 및 양산	○ 종류
	17) 휴대용 경보기	-
	18) 접촉성 금속장신구	○ 품목
	19) 벽지 및 종이장판지	○ 종류

[별표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구분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
	2) 간이빨래걸이	-
	3) 선글라스	-
	4) 안경테	-
	5) 텐트	○ 종류
	6) 고령자용 신발	-
	7) 고령자용 지팡이	○ 종류 ○ 재료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9) 고령자용 목욕의자	-
	10) 고령자 위치추적기	-
	11) 물안경	○ 종류
	12) 반사안전조끼	○ 종류
	13) 스테인리스 수세미	○ 종류
	14)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15) 침대 매트리스	○ 재질
	16) 우산 및 양산	○ 종류
	17) 휴대용 경보기	-
	18) 접촉성 금속장신구	○ 품목
	19) 벽지 및 종이장판지	○ 종류

현행		개정안	
분류		분류	
	모델구분		모델구분
	○ 재료		○ 재료
20) 감열지	-	20) 감열지	-
		21) 모터 달린 보드	○ 종류
[별표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 제5항 및 제6항 관련)		[별표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 제5항 및 제6항 관련)	
분류		분류	
품목		품목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2) 롤러스케이트 3) 바퀴 달린 운동화 4) 모터 달린 보드 5) 창문 블라인드 6) 쌍꺼풀용 테이프 7) 속눈썹 열 성형기 8) 가(假) 속눈썹(인조속눈썹) 9) 쇼핑카트 10) 휴대용 사다리 1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2) 키보드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2) 롤러스케이트 3) 바퀴 달린 운동화 4) 삭제 5) 창문 블라인드 6) 쌍꺼풀용 테이프 7) 속눈썹 열 성형기 8) 가(假) 속눈썹(인조속눈썹) 9) 쇼핑카트 10) 휴대용 사다리 1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2) 키보드
[별표6]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 제7항 관련)		[별표6]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 제7항 관련)	
분류		분류	
품목		품목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2) 간이 빨래걸이 3) 선글라스 4) 안경테 5) 텐트 6) 고령자용 신발 7) 고령자용 지팡이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9) 고령자용 목욕의자 10) 고령자 위치추적기 11) 물안경 12) 반사 안전조끼 13) 스테인리스 수세미 14)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5) 침대 매트리스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2) 간이 빨래걸이 3) 선글라스 4) 안경테 5) 텐트 6) 고령자용 신발 7) 고령자용 지팡이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9) 고령자용 목욕의자 10) 고령자 위치추적기 11) 물안경 12) 반사 안전조끼 13) 스테인리스 수세미 14)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5) 침대 매트리스

현행		개정안	
분류	품목	분류	품목
	16) 우산 및 양산 17) 휴대용 경보기 18) 접촉성 금속 장신구 19)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을 포함한다) 20) 감열지		16) 우산 및 양산 17) 휴대용 경보기 18) 접촉성 금속 장신구 19)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을 포함한다) 20) 감열지 21) 모터 달린 보드